오산시의회 공고 제2021-13호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철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원활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사회복지사협회 사업의 지원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사회복지사협회의 목적 달성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우선 임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의 포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6월 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8-511호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27일

발 의 의 원 : 김명철 의원

찬 성 의 원 : 장인수, 김영희, 이상복, 이성혁,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원활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사회복지사협회 사업의 지원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사회복지사협회의 목적 달성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우선 임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의 포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오산시 조례 제 호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원활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협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학술대회 개최 및 홍보·출판사업
4. 시장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제4조(지방보조금 신청 등) ① 협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신청과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시장은 협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6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시장은 협회의 목적 달성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협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한 협회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복시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 7. (생략)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제42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공유 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회복시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학술대회개최 및 홍보·출판사업
4.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협력
5.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준용규정) 협회의 임원, 이사회 및 운영경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협의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 ⑤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 24. (생략)

④ ~ ⑤ (생략)